

1. 개정이유

물류창고업 등록이 가능한 물류창고(보관시설)을 창고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주문배송시설까지 확대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물류창고업 등록이 가능한 물류창고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에서 같은 별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주문배송시설까지 확대(안 제3조제4항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제3호 중 “제18호”를 “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문배송시설이거나 같은 별표 제18호”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

나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아니할 것. 다만 해당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물류창고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.

다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부지의 반경 200m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유치원 또는 학교가 입지하기 전에 물류창고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.

라. 최소 1면 이상의 주차면을 전용 조업공간으로 확보할 것. 다만,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필요한 주차면이 1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면을 모두 전용 조업공간으로 확보할 것

마. 주문배송시설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문배송시설의 지나친 밀
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건·환경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
인 입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를 따를 것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물류창고업의 등록) ① ~ ③ (생 략) ④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2. (생 략) 3. 물류창고는 「건축법 시행 령」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 고시설일 것(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)	제3조(물류창고업의 등록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문배 송시설이거나 같은 별표 제18 호--- 가.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 배송시설이 없을 것 나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아니 할 것. 다만 해당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물류창고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렇 지 아니하다. 다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
<신 설>	
<신 설>	
<신 설>	

<신 설>

<신 설>

⑤ (생략)

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
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부
지의 반경 200m 이내에 위
치하지 아니할 것. 다만,
유치원 또는 학교가 입지
하기 전에 물류창고업 등
록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
아니하다.

다. 최소 1면 이상의 주차면
을 전용 조업공간으로 확
보할 것. 다만, 「주차장법
시행령」 제6조제1항의 기
준을 적용하였을 때 필요
한 주차면이 1면을 초과하
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면
을 모두 전용 조업공간으
로 확보할 것

마. 주문배송시설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문배송시설의 지나친 밀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건·환경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입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를 따를 것

⑤ (현행과 같음)